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i·sens

주식회사 아이센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센스는 창립 이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정직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언제나 윤리적 책임과 준법의무를 최우선으로 두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CP, Compliance Program) 선포를 통해, 그 책임을 전사적 실천의 체계로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최근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의 국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였으며, 이는 아이센스가 국내외 어떤 규제 환경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임을 공인 받은 결과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단지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기술, 신뢰, 조직문화,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지켜주는 경영인프라입니다. 이제부터 준법은 선택이 아닌 회사 생존과 경쟁력의 필수 조건입니다.

대표이사로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모든 임직원은 CP의 원칙과 기준을 숙지하고,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법규 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리스크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CP 담당부서인 윤리경영실 또는 법무팀과 상담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요구나, 불투명한 거래, 부당한 제안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회사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경영진부터 CP를 생활화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통해, 아이센스만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CP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나침반'이자 우리가 더 멀리, 더 오래 성장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글로벌 일류의 당뇨 및 진단기기 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연속혈당측정기를 개발한 기술력, 전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정신, 그리고 준법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는 우리 CP는 세계 속에서 존경받는 헬스케어 리더로서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 동참이 곧 아이센스의 '글로벌 신뢰도'입니다.
CP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아이센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주식회사 아이센스
대표이사 차 근 식, 대표이사 남 학 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제 · 개정이력표

NO	제·개정일	주요 개정 내용 및 사유	비고
1	2025. 6. 9.	최초제정	윤리경영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목차

[알고 가기] 1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2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2
2. CP 의 8 대 핵심 구성요소 2
3. CP 의 도입 필요성 3
4. CP 등급 평가 방법 4
5.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인센티브 6
II.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영업 및 구매] 7
1. 취지 및 역할(공정거래법 제 1 조) 7
2. 주요내용 7
3.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 9
4.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 10
5. 공정거래법 관련 Q&A 13
6.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15
7. 공정거래법 Check-list 16
II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영업] 17
1. 취지 및 역할(대리점법 제조 제호) 17
2. 주요 내용 17
3. 대리점법 위반 시 제재 22
4. 대리점법 관련 사례 26
5. 대리점법 관련 Q&A 28
6.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29
7. 대리점법 Check-list 31
IV.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생산, 연구, 구매, 총무] 34
1. 취지 및 역할(하도급법 제 1 조) 34
2. 주요내용 34
3.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50
4. 하도급법 관련 사례 54
5. 하도급법 관련 Q&A 57
6.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59
7. 하도급법 Check-list 61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연구, 생산, QA, 영업]..... 65

1. 취지 및 역할(부정경쟁방지법 제 1 조)..... 65
2. 주요내용..... 65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제재..... 69
4.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례..... 72
5.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Q&A..... 73
6. 부정경쟁방지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74
7. 부정경쟁방지법 Check-list..... 75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알고 가기]

1. **아이센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이 다루고 있는 법령**

2. **아이센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주식회사 아이센스의 주요 사업을 고려하여 아래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②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3. **아이센스 구성원들의 자율준수편람 활용법**

   아이센스 구성원들은 업무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자율준수편람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하나	관련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둘	위반 시 제재를 알아보기
셋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례 또는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기
넷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을 하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란, Compliance Program의 약어로,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며, 임직원들에게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법규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규범입니다.

2. CP 의 8 대 핵심 구성요소

①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규범이 기업 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훌륭히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및 지원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운영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자율준수관리자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합니다.

⑤ 임직원을 위한 지속적,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들에 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최소 반기 1회 이상 교육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⑥ 내부감독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⑦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규를 마련하고 운용하여야 합니다.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기준과 절차, 운용 등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CP 의 도입 필요성

①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시대적 요구사항

경쟁질서 준수는 기업활동에 필수적 요구사항이 되었으며,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정착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을 솔선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CP도입은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③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CP를 운용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CP도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기업들도 CP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④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경우, CP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력한 기업은 경쟁당국으로부터 Incentive로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등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CP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 부과 등)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 하게 됩니다. 다만, CP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무효로 됩니다.

4. CP 등급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된 기업이 CP 등급 평가 대상이 됩니다(CP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CP 등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평가기관

평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현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CP등급평가 업무를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평가기준

CP 등급은 CP의 8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 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④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3등급(AAA, AA, A)으로 하여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등급	평가점수	정의
AAA	90 이상 100 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매우 높은 성과를 시현
AA	80 이상 90 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높은 성과를 시현
A	70 이상 80 미만	■ CP 구축 및 운영, CP 문화 확산, 평가와 개선 등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⑤ 평가절차

CP 도입 기업의 CP 등급평가심사 참여 결정

1 단계 (서류 평가):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

2 단계 (대면 평가): 1 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이 대면 평가

3 단계 (현장 평가): 평가위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대면평가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5.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 경감 인센티브

부여되는 CP 등급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유효기간(2 년) 중 1 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CP 등급	과징금 감경(최대)	직권조사 면제	시정조치 공표 명령	
			간행물 크기/매체수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AAA	15%(20%)	2 년	2 단계 하양조정	공표기간 단축
AA	10%(15%)	1 년 6 개월	1 단계 하향조정	

※ 과징금 추가 감경(5%) 사유: 당해 사건 조사개시 전에 법 위반행위를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II.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영업 및 구매]

1. 취지 및 역할(공정거래법 제 1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담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①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②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 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일반 부당지원 규제와 사익편취행위 규제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당지원 규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 45 조 제 1 항 9 호	공정거래법 제 47 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분	부당지원 규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모든 사업자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지원객체	모든 회사(계열회사 포함)	총수일가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자회사
금지행위 유형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소위 '통행세' 거래)	①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안전지대 여부	해당 없음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거래조건 차이 7% 미만, 연간 거래금액 50 억원(상품 · 용역 200 억원) 미만 ② 상당한규모의 거래: 연간거래총액 200 억원 미만,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 12% 미만
부당성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하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여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 ·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②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작품이나 문화작품, 경쟁제한의 효과가 적은 일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법상 저작물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2) 공정위가 사전 지정한 상품 (현재 지정된 상품은 없음)

3.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4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부과(공정거래법 제50조)

(1)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당공동행위(법 제43조):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보복조치(법 제50조): 매출액에 100분의 4를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형사처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행위 유형 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들이 단체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

1. 효성이 페이퍼컴퍼니와의 파생 금융 상품 거래를 이용하여 우회 자금 지원을 한 사례

[의결 제 2018-148 호]

• 사실관계

효성투자개발(주)는 (주)효성의 교사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가 발행하는 250 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금융회사 설립)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는 퇴출을 모면하였고, 저리의 전환 사채 발행에 따른 금리 차익 혜택도 얻었으며 나아가, 중소 기업 시장인 LED 조명 분야에서 사업 기반까지 강화했습니다.

• 공정위 판단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 조현준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 24 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효성투자개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효성」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및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 24 조의 2, 제 55 조의 3 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거래를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효성」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 24 조의 2, 제 55 조의 3 에 따라 효성투자개발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효성이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TRS 거래를 통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게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 효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기업집단「효성」에 속하는 사업자라는 점,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 24 조의 2, 제 55 조의 3 에 따라 효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2. SK 기업집단 계열회사(7 개)의 부당지원행위

[결정 2017-002]

• 사실관계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면세품 인터넷 사전예약 주문접수 및 결제 사이트인 싸이버스카이숍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판매된 싸이버스카이숍 인터넷 광고수입 전액을 싸이버스카이에게 귀속시켰습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 체결한 통신판매사업계약에 따라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한항공에게 지불해야 하는 통신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면제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로부터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는 판촉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판촉물 가격과 마진율을 급격히 인상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와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SK 브로드밴드가 유니컨버스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시스템 장비에 대해서도 시스템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위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 2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제 3 항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3. 해태음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사례

[2009 제감 2383, 의결 제 2010-005 호]

• 사실관계

피심인(해태음료)은 음료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시가에서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액 등 일정 금액 이하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이행각서를 징구하거나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고지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 거래중인 대리점을 자신의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140 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사례

[2016 시감 2063, 의결 제 2019-116 호]

• 사실관계

피심인(넥센타이어)은 온라인에서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자사 타이어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지정·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한 경우 피심인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1,148 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5. 공정거래법 관련 Q&A

Q: 만일 당사와 거래하는 계열사인 A 사와 비계열사인 B 사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서 A 사에게는 현금으로, B 사에게는 60 일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가?

비계열회사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큼(물론 지원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적정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Q: 계열회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법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법에 근거하였다고 하여도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이 많거나 낙찰율이 경쟁에 의한 낙찰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될 우려가 적습니다.

Q: 경쟁사보다 제품을 싸게 파는 행위는 부당염매가 되는가?

제품공급가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으로서 제품을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였다고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자가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품에 하자 내지 재고의 처리를 위해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를 하는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Q: 비계열사인 "A"사로부터 수년간 물품공급을 받아오다가 계열사인 "B"사가 동종품질을 생산함에 따라 "A"사로부터의 공급을 줄이고 "B"사로부터 공급을 늘린 경우 공정거래법상문제가 되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가격, 품질 등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물품구입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전면 중단하는 것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또는 거래거절(또는 부당지원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이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를 타사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취급한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열회사간 거래 시에 거래조건의 설정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대리점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안내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출고를 중단한 사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 시 불이익(출고정지, 계약 해지 등)을 실제로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처럼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최고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경우에 따라 허용됩니다.
최고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소수 거래처 간 담합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에 실패할 경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6.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DO

1) 특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다른 계열회사/대외 고객사와의 거래조건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거래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방식을 통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열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 평가 등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필요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다른 비계열사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 차별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4)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열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사유로 계열회사가 대체불가한 역량/기술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로 효율성/보안성/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다른 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DON'T

1)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라는 이유 또는 계속해서 거래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의사결정이나 검토없이 계열회사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2) 계열회사와 거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3) 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다른 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다르게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4) 계열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검토없이 계속하여 계열회사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7. 공정거래법 Check-list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9호 (부당지원행위)	자금 지원	•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였는가? • 출자행위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자산 및 상품 등의 지원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공정거래법 제4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가? • 정상가격(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연간 총 거래금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가(안전지대)?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대리점에게 "희망소비자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는가? •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하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였는가? • 대리점에게 "권고" 혹은 "협조"의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불이익 조치를 행할 것을 고지하였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III.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영업]

1. 취지 및 역할(대리점법 제조 제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이라 합니다**)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대리점의 피해 사례를 계기로,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특별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구속조건부 거래, 경제적 이익 강요, 불이익 제공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며,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여 분쟁 예방을 강화합니다.

.

2. 주요 내용

1)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대리점법 제5조)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④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⑥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⑦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2) 구입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6조)

(1) '구입강제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입강제는 상품/용역의 주문강요 및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주문하지 않은 상품/ 용역의 일방적 공급 등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구입강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이 특정 상품/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3)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금지(대리점법 제 7조)

(1)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 물품 · 용역, 그 밖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 · 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대비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대리점법 제8조)

(1)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판매목표강제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③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⑤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⑥ 외상매출기간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5)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대리점법 제9조)

(1) '불이익 제공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계약서 내용 관련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대리점거래 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 또는 미지급하는 행위
-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6) 경영활동 간섭 금지(대리점법 제10조)

(1) '경영활동 간섭'이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 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7)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금지(대리점법 제11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1)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란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대리점의 '주문'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모바일/ 유선전화/ 팩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주문도 포함합니다.

(3) 확인요청의 '거부'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직접적 ·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산시스템 오류나 주문내역의 미기록 · 삭제 등을 이유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8) 보복조치행위 금지(대리점법 제12조)

(1) '보복조치행위'란 공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리점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에 따른 신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 대리점법 제27조의 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2) 대리점에게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 외에도 계약 해지/반품 제한/금전의 미지급 및 일부 지급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대리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3. 대리점법 위반 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1)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의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참조).

①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6조 위반)

②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7조 위반)

③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8조 위반)

④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9조 위반)

⑤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10조 위반)

⑥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11조 위반)

⑦ 보복조치 금지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12조 위반)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참조).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권고를 통지 받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참조)

①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6조 위반)

②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의 범위

③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7조 위반)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 가액의 범위

④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같은 법 제8조 위반)

⑤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자(같은 법 제9조)

-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한 경우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한 경우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분담하게 한 경우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의 가액
- 기타 불이익 상당액의 범위

⑥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한 자 (같은 법 제10조 위반)

⑦ 보복조치 금지행위를 한 자 (같은 법 제11조 위반)

⑧ 보복조치 금지행위를 한 자 (같은 법 제12조 위반)

(4) 과태료 (같은 법 제30조의 2)

①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같은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②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같은 법 제2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제3항)

③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같은 법 제5조 참조)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 (같은 법 제5조 제1항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참조)

양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 (같은 법 제5조 제2항 참조)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 (같은 자 제5조 제3항)

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법 제22조 제2항)

2) 형사적 제재

(1)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 (같은 법 제30조)

아래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 행위를 한 자

② 같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③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④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⑤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⑥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⑦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⑧ 같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행위자가 위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도 동일한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3) 민사적 분쟁

(1) 손해배상

공급업자가 아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참조).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손해 3배 배상의 범위

공급업자가 아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참조).

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자

② 같은 법 제7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위와 같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참조).

① 고의 또는 손해 배상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⑦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대리점법 관련 사례

1.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당으로 불이익을 준 사례

[공정위 2013 서경 1385]

• 사실관계

주식회사 N 은 제품 회전율이 낮아 유통이 부진한 제품 등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 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기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 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습니다. 2010 년 9 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PAM21)을 변경하여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여,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구입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 시스템은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N 사은 대리점법 구입강제 금지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과징금 125 억 원 부과 및 임직원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공정위는 구입강제가 이루어진 4 년여 기간동안 26 개 품목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125 억원의 과징금도 위법 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후, 공정위는 주식회사 N 에 5 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자발적 주문 물량과 구입강제된 물량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2. 상시적 밀어내기 행위로 불이익을 준 사례

[공정위 2014 전사 1457]

• 사실관계

주식회사 J 는 부산영업소에서 2011 년부터 2013 년 6 월까지 매월 10~14 개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각 제품별로 할당량을 정한 후 관할 35 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밀어내기 품목은 신제품 및 매출부진 제품, 검은 콩깨두유, 검은 참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에 밀어내기가 주로 발생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은 매월말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후 이를 팩스, 이메일,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할당량 미만으로 주문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 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 여부와는 관계없이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J 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 할당량을 정하여 주문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 억 3,500 만원 부과하였습니다.

3. 본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대리점에게 계약을 체결·유지토록 한 사례

[공정위 2018 서감 1594]

• 사실관계

S 주식회사는 자신의 종합 유선 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 유치 및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게 (1)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고, (2) 업무용 개인 휴대정보단말기(이하 'PDA'라 합니다)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하였으며, (3)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 방송·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S 주식회사가 계약 기간(16 년 2 월 ~ 17 년 12 월)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17 년 2 월)함으로써 총 26 개 대리점 중 20 개 대리점의 2017 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18 억 원)하여 영업 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리점법 제 9 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 1 항을 적용, 과징금 3.5 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5. 대리점법 관련 Q&A

Q: 대리점이 주로 영업하고 있던 지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A 대리점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도록 종용하였다면 법위반인가?

판매지역의 결정은 판매점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의 판매 지역을 좌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본사 판매정책상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판매활동 및 관리가 필요한 특수 수요처에 대해 판매대리점의 판매활동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판매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부당한 거래상대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행위로 인해 거래가 제한되는 특수 수요처의 범위, 판매대리점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정도, 위반에 대한 제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관리의 편리를 위해 대리점을 본점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당사의 관리영업점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점 본점이 이전함에 따라 그 의사와 무관하게 관리영업점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성은?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점을 변경하는 경우 라면 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회사가 협력사에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 수수료 수준을 차등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하였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판매량에 비례하여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차등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자체를 차등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6.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DO

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 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3) 발주서면에 대리점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5) 당사가 대리점을 대등한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 또는 서면(필요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7) 당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정책 및 지원(장려금제도 및 각종 프로모션 등), 대리점 영업전략, 예상매출액, 판촉활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8) 계약서에 없으나 대리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조건 변경은 사전에 반드시 거래 상대방과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9) 평소와 다른 계약조건이나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는 그것이 관련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10) 거래약정서, 부속서류, 이메일, 구두협의 등 형식을 불문하고 장려금 지급기준, 지원 기준 등 에 명시적으로 '경쟁사 제품 취급 제한'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1) 당사의 거래조건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무팀과 사전에 협의 후 수정하여야 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13) 계약서에 공급업자 이외에 대리점의 기명 또는 서명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4) 거래종료 후 3년간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5) 대리점 거래 종료 시 사업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거래관계 종결의 이유도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대리점의 선투자금이 회수되기 이전에는 가급적 거래관계를 종결 하지 않아야 함).

DON'T

1)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대리점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3) 대리점 계약서는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백만 원 이 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여서는 안됩니다(허위서류 보존).

4)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백만 원 이하).

5)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6)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 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서는 안됩니다.

7) 대리점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8)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9)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회피하여서는 안됩니다.

10)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또는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11) 권장소비자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되, 권장소비자가격을 지키도록 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계약 해지, 출고 정지 등)을 부과하는 않도록 하며,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백만 원 이하).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7. 대리점법 Check-list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대리점법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계약서 작성/보관**	• 계약체결시 유통망의 서명(전자서명 포함)을 받았는가? • 계약체결 시 부속협정서(HAIMS 사용 계약서, 전산시스템 계정 사용기준 준수 서약서, 부품공급 및 사용기준 준수확약서)도 체결 하였는가? • 관련 서류(계약서 및 부속 협정서)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대리점법 제6조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구입 강제**	• 유통망이 청구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거나 이에 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해당 상품의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 재고자동보충시스템(CRP)의 자동보충 재고량의 상한값/하한값 설정을 간섭하거나, 자동보충 실행을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 요청에 의하여 재고자동보충시스템(CRP)의 자동보충재 고량 상/하한값 조정하는 경우 유통망의 요청내용 증빙자료 (협조전)를 보관하였는가? • 유통망이 전화통화나 팩스로 청구한 품목을 판매 시 판매시스템에 유통망 청구내역(청구일시, 청구방법, 청구량 등)을 입력하였는가?
대리점법 제7조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이익제공 강요**	•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유통망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의 인원을 당사의 사업장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에게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을 당사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당사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비용/인력을 유통망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한 경우가 있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판매 목표 강제**	• 유통망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순정부품 공급을 중지하거나 공급량을 축소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미지급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의 외상 기간 단축 등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가 있는가?
대리점법 제9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	• 유통망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변경/개선 하도록 강요하거나, 시공업체 선정을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근무조건에 대해 간섭한 적이 있는가? 3. 유통망의 청구량을 취소 또는 차감 시 유통망에 사전 공지 하였는가? ※ 시스템상 청구량 증가 수정 불가능하고 차감 수정만 가능 • 유통망의 청구량을 취소 또는 차감 시 시스템에 수정 사유(외상거래 한도 초과, 재고량 부족, 설변/단산 품목 등)를 입력하였는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통망에 판매장려금 또는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제한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이 계약서 상에 기재된 반품규정을 준수하여 요청한 반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가 있는가? • 정당한 사유에 의해 반품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스템상에 반품 불가(미확정) 사유를 입력하였는가? (반품 요청 품목과 실물 차이, 반품 요청 수량과 실물 수량 차이, 유통망 귀책에 의한 상품 훼손, 반품 기한 초과 등) • 당사 영업망 정책에 대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유통망에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배송 횟수 조정 등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대리점법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경영 간섭**	• 유통망이 재판매하는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미준수 시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이 타사 상품을 취급/판매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의 재판매가격에 대해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는가? • 유통망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변경/개선 하도록 강요하거나, 시공업체 선정을 강요한 경우가 있는가? • 유통망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근무조건에 대해 간섭한 적이 있는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통망의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영업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대리점법 제11조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주문내역 확인 거부**	• 유통망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가 있는가?
대리점법 제12조 (보복조치 금지)	**보복 조치**	• 당사나 당사의 특정부서 또는 임직원을 대/내외 신고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가 있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IV.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생산, 연구, 구매, 총무]

1. 취지 및 역할(하도급법 제 1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등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해지하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도급법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납품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측면에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연 시 이자 지급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전자문서 활용 등 정보 공개 및 거래 투명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규제를 넘어 협력적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범위(하도급법 제2조)

(1) 법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라 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됩니다.

공정위 하도급 조사 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② 원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 원 초과)과 소규모 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3,000억 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 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 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2) 법적용 대상거래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을 수령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 2조 제1항).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게 됩니다.

(3) 법적용 범위 및 처분시효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 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래종료일의 의미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의 위탁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역무 공급 위탁	역무 공급 완료한 날
건설위탁	공사 완공일

2) 서면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원칙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한 사항(법정기재사항 6가지) 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 (서명) 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기재사항]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댓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 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법 위반 유형

①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 (불완전한 서면교부)
②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어 ,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⑤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⑥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 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 거래 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3)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 4)

(1)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하도급법 제3조의4)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2) 위법성 판단기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아래에 열거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④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⑤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⑥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 위반 유형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1) 부당한 하도급이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용역’이라 합니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용역업자’라 합니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법성 판단 기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하도급법 제4조).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봅니다.

(3) 법 위반 유형

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행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하는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행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립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입니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는 행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 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④ 원사업자가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는 행위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동법 제4조 제2항 제5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동법 제4조 제2항 제6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 (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 (法定) 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⑦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동법 제4조 제2항 제7호)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5)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하도급법 제8조)

(1) 개념

① 부당한 위탁취소(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과 관련한 사례는 아래 세가지와 같습니다.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있는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영상 중대 한 사유 발생 ,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 (절차 및 내용) 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② 부당한 수령거부(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3배)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만 합니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됩니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이나 물량 보전을 하더라도 수령거부 (또는 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부당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1)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10조).

(2) 반품의 예외 사유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합니다.

①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②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3) 법 위반 유형

①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③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됩니다.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반품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됩니다.

⑤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됩니다.

⑥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됩니다.

⑦ 하자에 대한 책임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품에 해당됩니다.

(4) 업무 시 유의사항

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 서는 안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의 대상이 됩니다.

② 반품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 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반품에 해당됩니다. 다만,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7) 검사 및 검사 결과통보 의무 (하도급법 제9조)

(1) 원칙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 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 ,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통지기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 통지의무의 예외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됩니다.

③ 검사비용문제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① 검사 결과 통보 의무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② 검사와 반품의 관계 (대량 납품하는 경우)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품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 (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 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3) 법 위반 유형 (검사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다.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4) 업무 시 유의사항

①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 한 것으로 봅니다.

⑤ 법정검사기일 (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⑥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1) 원칙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된다(하도급법 제11조).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 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유무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 법 위반 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입니다.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입니다.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예를 들어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즉,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입니다.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 감액으로 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다.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 감액에 해당됩니다.

(4) 업무 시 유의사항

①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③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봅니다.

3.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1) 분쟁조정(같은 법 제24조의 4,6)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시정조치(같은 법 제25조)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253조의 3)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수급사업자의 경우도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과징금대상)

※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를 구분합니다.

* 과징금 기본산정 기준: 하도급대금의 2배 × 위반금액의 비율 ×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 (지급) 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30조의 2)

①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 억 원, 관련 임직원은 1천만 원 이하 부과 받습니다.

②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억 원, 관련 임직원은 5천만 원 이하 부과 받습니다.

③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백만 원 이하 부과 받습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백만 원 이하 부과 받습니다.

(5) 기타

①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3년간 벌점 10점 초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받습니다.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직전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 일부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조치 (경고 이상) 를 받고 누산벌점 4점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직전 (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5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직전 (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10점

※ 과징금 가중 사유: 과거 3년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 (경고 이상) 를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최대 20% 가중

2) 형사적 제재

(1) 고발

원칙적 사업자가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 기술유용행위금지 (법 제12조의3 제4항) 을 위반한 업체로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2) 벌칙(같은 법 제30조)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보복조치 위반시 3억원 이하,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위반시 1억 5천만원 이하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의 경우 원칙적 고발하여야 합니다.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

3) 민사적 분쟁

(1) 손해배상(같은 법 제35조)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일부 법위반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있습니다.

※ 3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보복조치

※ 5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기술자료 유용 (2024. 8. 28일부터 적용)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법원 자료제출명령 (같은 법 제35조의2) 및 비밀유지명령 (같은 법 제35조의3) 도입하였습니다.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하도급법 관련 사례

1. 하도급법제 3 조 제 2 항 및 동법 령 제 3 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사례

[공정위 2021 제하 1055]

• 사실관계

주식회사 K 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 년 9 월, 10 월, 2016 년 10 월에 총 5 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 3 조 제 1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2. 수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

[공정위 2019 부사 1573, 2019 부사 1574, 2020 부사 0602, 2020 부사 0967, 2021 부사 2220]

• 사실관계

주식회사 S 은 2016 년 1 월부터 2020 년 11 월까지 69 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S 은 2016 년도에 23 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 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주식회사 S 은 2017 년 10 월 부터 2020 년 11 월까지 55 개 하도급사와 4,113 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

[공정위 2019 서제 0311]

• 사실관계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H 는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 10 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 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 년 3 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였습니다.

* 2012 년 15%, 2013 년 0.63%, 2015 년 4.9%, 2018 년 1 월 6.7% 인상하여, 2018 년 가공비는 누적 인상율을 반영하면 2008 년 대비 29.4% 인상되었습니다.

**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1 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주식회사 H 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함으로써 시정명령을 받게 된 사례

[공정위 2019 서제 1338]

• 사실관계

주식회사 S 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2016 년 4 월 수급사업자에 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 년 5 월 수령하였으나 , 3.9 백만 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 일이 지나 수급사업자 에게 반품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금 합계 1.8 백만 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 (연 25%의 이율 적용) 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5.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함으로써 시정명령을 받게 된 사례

[공정위 2022 건하 0916]

•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9 년 7 월부터 2021 년 12 월까지의 기간 동안 11 개 수급사업자에게 엘지전자 미 금점 인테리어 부분공사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 일이 경과한 이후에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 공정위 판단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 하도급법 제 9 조 제 2 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였으며 피심인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6.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

[공정위 2021 제하 1055]

• 사실관계
주식회사 K 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하도급대금 15 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페널티 부과의 구체적인 내역 , 즉 불량품의 개수와 내용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하자 발생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대 금 36 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하였습니다.

•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 11 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 금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 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 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여 공정위는 과징금 을 부과하였습니다(대금 미지급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1.15 억 원을 부과)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5. 하도급법 관련 Q&A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 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당사자간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서면 지연 교부에 해당하며,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Q: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대금의 산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시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 가능한데,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 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한 일자(단가 합의일)와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일자(단가변경일)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합의일 이전의 발주분에 대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 시에는 합의일 이후 분의 물량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합의일 이전의 물량에 대하여 소급해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Q: 서비스 (용역) 거래는 즉시 현금 지불되는 것이 많은데 용역을 제공한 후 60 일 이후에 지불한다든지 어음으로 지불하는 등 지불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원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계기로 일방적으로 지불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하도급법상으로도 지불조건의 악화를 예상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Q: 발주 시에 서면에 기재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초서면에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이유"와 "내용을 확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기재하는 데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또한 어쩔 수 없이 예정 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되는가?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미정으로 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하고, "예정 기일"은 구체적인 날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예정 기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역무위탁에는 수령거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원사업자가 해지통보를 해도 되나?

역무제공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령거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6.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DO

1) 기술 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전속적 거래에 대한 약정은 가능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3)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 (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6)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 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합니다.
7)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8)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 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격 결정시 국제적인 가격지표가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용 변동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DON'T

1)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 (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 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 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 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구매 담당자가 구매 관련 목표가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품과 수출품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8)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9)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7. 하도급법 Check-list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하도급법 제2조 (정의)	**협력사선정**	• 협력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가? •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입찰공고**	•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 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 경쟁입찰로 선정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발주 및 계약**	•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 및 발주서 없이 물품제조 및 입고요청을 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 (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 •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S 절차 등) •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경계약서 또는 보충서 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대리점법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서면 보관**	• 하도급 관련 서류 (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 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특약 검토**	•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 하였는가? •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이 있는가? •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 설정하였는가?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정이 있는가? •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 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대금 결정**	• 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였는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대금지급조건, 거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물량증대 (다량발주) 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 다량발주 (물량증대) 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 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 수의 계약 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 하지는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 당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PO에 기재 된 Lead Time)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 사유로 수령을 지 연하였는가? •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한 적이 있는가?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가 부진 하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 (1개월) 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반품**	•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 하였는가? •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대상부서: 전 부서, 연구, 생산, QA, 영업]

1. 취지 및 역할(부정경쟁방지법 제 1 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내용

1) 적용대상 및 범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③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다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④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라목)

상품이나 광고에 의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⑤ 품질 등 오인야기 행위(마목, 바목)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는 행위

⑥ 대리인 등의 부정한 상표사용행위(사목)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권자의 대리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⑦ 도메인이름의 부정한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 행위(아목)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⑧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

⑨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차목)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⑩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카목)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⑪ 타인의 성명, 초상 등 무단 사용행위(타목)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⑫ 그 밖의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비공지성(비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② 경제적 가치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될 것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정취득행위 및 그 사용·공개 행위(가목)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부정취득 사실을 알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나목, 다목)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사용·공개하는 행위(라목)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마목, 바목)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4조)

(1)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같은 법 제3조)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같은 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1조)

(1)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5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 해당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나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7) 영업비밀 원본 증명(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9조의3)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원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8)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8)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1)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

다음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원본증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적 제재

(1) 벌칙(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①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행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등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 등

③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

④ 부정경쟁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일부 제외)

같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한 자

⑤ 원본증명기관 관련 위반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 등을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미수범 및 예비·음모(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국외 유출 행위의 예비·음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예비·음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양벌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3) 민사적 제재

(1)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조)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1조, 제14조의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특히,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3) 신용회복(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4.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례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기밀정보 유출 사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를 그만두고 경쟁업체 LG 디스플레이(LGD)의 협력업체에 아몰레드 관련 기밀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씨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씨는 퇴사 후 2 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약정을 피하고자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경쟁업체의 협력업체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지고 있던 문서나 업무수첩 등을 없애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2. 공동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A 업체의 하청업체인 B 사를 운영하는 ㄱ씨가 A 회사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총 20 장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회사 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A 사와 경쟁업체인 C 회사 직원 ㄴ씨 등에게 기술 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A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4. 경쟁사 영업비밀 활용 사례

의료분야 구매경쟁업체인 케어캠프가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과 산업스파이영입 의혹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케어캠프는 경쟁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내역이나 금액 등을 토대로 경쟁사의 거래 병원과의 거래를 성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5.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Q&A

Q: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가치성), ③비밀로 관리되는(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영업비밀 침해 시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통해 침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해당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①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영업비밀 표시 및 분류, ③접근 제한 및 관리, ④퇴사자 관리, ⑤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6. 부정경쟁방지법 준수를 위한 DO & DON'T

DO

1)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나 파일에는 '대외비' 또는 '기밀'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3)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4) 직원 채용 시 및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중요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는 제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DON'T

1)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3) 퇴사 시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됩니다.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6)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안됩니다.
7)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8)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

7. 부정경쟁방지법 Check-list

구 분(법 조항)	항 목	점 검 사 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상품표지 혼동행위, 영업표지 혼동행위)	**상품표지 및 영업표지 사용**	• 사용하려는 상표, 상호, 포장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원산지 오인행위, 품질 오인행위)	**원산지 및 품질 표시원산지 및 품질 표시**	• 상품이나 광고에 거짓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가? •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아이디어 탈취행위)	**아이디어 보호**	•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관리**	•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영업비밀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가? • 임직원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퇴사자로부터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회수하고 있는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벌칙)	**형사처벌 리스크 관리**	•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교육 하고 또는 받고 있는가? •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가?

COPYRIGHT©2025 주식회사 아이센스. ALL RIGHTS RESERVED.